###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

제정 2018, 10, 22, 개정 2019. 9. 30. 2020. 11. 2. 개정 개정 2021. 9. 27. 개정 2022. 2. 28. 개정 2023. 10. 16. 개정 2024. 10. 7. 2025. 3. 31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(교육과정)에 의거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"대학")의 건학이 념, 비전, 사명을 근간으로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달성하고 산업계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편성, 운영, 품질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방향)**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건학이념, 교육목표, 비전, 사명을 근간으로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.

- ②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각 호의 체계를 활용하여 편성한다.
- 1. NCS 체계(National Competency Standard,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)
- 2. CK-CEF 체계(ChungKang-Certificate Framework, 청강역량인증체계)
-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3년 주기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, 인증유형은 개발, 개편, 유지 중 선택한다.
- ④ 대학의 교육과정은 스쿨(전공) 및 학과의 교육목표, 교육방침, 교육수요자(학생, 교수자, 산업체)의 요구, 산업계 변화 동향과 수요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다.

**제3조(적용대상)** ① 본 규정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스쿨(전공) 및 학과, 교양교육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
- ② 전공 교육과정은 스쿨(전공) 및 학과,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원 주관으로 개발한다.
- ③ 모집단위(편제정원)가 없고,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편성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4조(구성)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교과, 전공교과, 교직교과로 구분하며, 각 교과의 세부 사항은 각 호와 같다.

- 1. 교양교과: 교양선택
- 2. 전공교과: 전공필수, 전공선택
- 3. 교직교과
- 4. 일반교과: 일반선택

제5조(용어정의) 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용어는 각 호와 같다.

	구분	정의							
1	핵심역량	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에 근간한 학습활동 후 우리대학 학생들이 보편적							
	백 김 극 중	으로 갖게되는 역량							

2	스쿨역량	스쿨의 교육목표에 근간한 학습활동 후 스쿨(전공) 학생이 갖게 되는 역
2	(=능력단위)	량
3	스쿨역량하위요소	스쿨역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역량. 1개의 스쿨역량하위요소는
	그물극당아귀효소	3수준(Super-Average-Basic)으로 구성되며, 교과목의 학습기준이 됨
4	교과목	교육내용의 묶음. 수준별 스쿨역량하위요소의 조합으로 구성
5	n c	하나의 스쿨역량 또는 스쿨역량하위요소를 달성하기위해 이수해야하는
5	모듈	교과목 그룹
6	로드맵	특정 학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천 과정.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

제6조(개발절차) ① 교육과정은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1. 환경분석
- 2. 교육목표 및 역량 도출
- 3. 역량 적합성 검증
- 4. 교과목 도출
- 5. 교수요목 작성
- 6. 교육과정 자문

#### 제7조(편성원칙)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, 전공교과, 교직교과, 일반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.

- ② 교육과정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며,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을 졸업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적변동자(복학, 전과, 유급 및 재입학자)는 학적 변동 시점의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.
- ③ 1학점 1시간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:1 이상 편성할 수 있다.
- ④ 학기당 15학점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양 교육과정 및 학제의 마지막 학년학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⑤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편성함을 권장한다. 단, 특수사유(전공 운영상 필요한 경우, 국가고시, 전공 필수 자격증 취득, 모집정지 등)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⑥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실습과목 시수를 전체 교과목 시수 대비 50% 이상 편성한다. 단, 교양 교육과정과 특수사유(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, 모집정지 등)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⑦ 2년제 전공의 경우 전공필수 및 교양 학점을 포함하여 78학점 이상, 3년제 전공의 경우 117학점 이상 교과목을 편성한다.
- ⑧ 현장실습 교과목은 2학점, 주당 40시수, 전공선택으로 편성하며, 세부사항은 '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'을 따른다.
- ⑨ 원격수업 교과목은 전공 전체 교육과정의 30%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양 교육과정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, 모집정지전공의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⑩ 일반교과의 편성은 무경계전공제 혁신전공제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## 제8조(교양 교육과정) ① 교양 교과목은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한다.

- ②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의 이수 조건은 2년제의 경우 8학점 이상, 3년제의 경우 10학점 이상으로 한다.
- ③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원에서 편성하며, 전공 교육과정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을 원칙으

로 하다.

제9조(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)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은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 교육 기회 부여,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직무역량, 평생 학습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편성한다.

-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3년제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37학점 이상으로 한다.
- ③ 매 학기 10학점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교육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.
- 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30% 이상 유지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.
- ⑥ 개발, 편성, 인증 모두 전문학사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산업체 위탁 교육과정) ①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은 산업체 직업기술 변화 능동적 수용, 산업체 교육 요구사항 반영 등 탄력적 편성 및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두고 편성한다

- ②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을 개설한 전공 대상으로 하며, 위탁산업체와의 협의하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개발, 인증 모두 일반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한다.

제11조(무경계 전공제 교육과정) ① 대학의 창의, 융복합, 협업, 대학 정책상 필요한 교육을 위한 교육과 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경계전공제 운영 규정을 따른다.

제12조(교육과정 인증) ①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 인증제를 실시한다.

② 교육과정 인증유형은 각 호와 같다.

	교육과정 인증 유형							
		- 편성절차를 거쳐 교육과정 신규로 운영하는 경우						
,	개발	- 이전 개발인증 후 3년 경과시						
1		- 교육목표, 인재양성유형, 스쿨역량 변경시						
		- 개편 교과목수가 전체 교과목의 30% 초과시						
2	न्गो त्त्रने	- 교육목표, 인재양성유형, 스쿨역량은 유지한 채로 개편 교과목수가 전체 교과						
	개편	목의 30% 이하인 경우						
3	유지	- 전년도 교육과정을 차년도에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						

③ 교육과정 개발(개편)은 휴학생의 재수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.

제13조(교육과정 인증 절차) ① 교육과정 인증 절차는 각 호와 같다.

		교육과정 인증 절차			
1	교육과정 작성 및 제출	원장 및 학과장은 대내외 환경분석, 요구분석 기반으로 교육과정안을 작성하고, 스쿨(학과)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(안) 을 제출한다.			
2	교육혁신센터 검토 및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	- 제출된 교육과정(안)은 교육과정혁신센터의 검토 후 교육과정혁신위 원회, 교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진행한다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시 위원별 인증평가표(별지서식)를 작성하 여 평가한다. (교육과정 유지의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교육혁신센 터에서 서면 점검) - 위원별 점수의 평균으로 인증평가를 심의하며, 기준은 아래와 같다.			
	심의	인증평가 기준(개발/개편)  1 Pass - 평균 80점 이상 2 Non Pass - 평균 79점 이하			
3	교무위원회 심의	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을 교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.			
4	대학평의원회 자문	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을 대학평의원회에 보고하여 자문을 받는다.			
5	교육과정 확정	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, 교무위원회 심의,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통과한 교육과정(안)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개시일 1개월 이전에 확정한다.			

- ② 교육과정 인증은 학기 운영 중에 불가함이 원칙이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.
- ③ 모집정지된 스쿨의 교육과정은 개발 필요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인증 유형을 달리할 수 있으며, 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④ 확정된 교육과정의 수정은 불가함이 원칙이나 수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14조(교육과정 운영)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다음의 제반 절차를 따라 편성, 운영한다.

	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제반 절차								
연번	구분	주체	내용						
1 2	교육과정 개발(개편) 및 인증 심의 수업운영 계획 및 확인	스쿨학과/교양교육원 대학(교육혁신센터) 스쿨학과/교양교육원 대학(교육개발처) 대학(현장실습지원센터)	- 교육과정 개발절차에 교육과정 품질관리 환류사항 반영 - 직무분석을 통한 스쿨 교육과정 편성 - 교육과정 인증 유형별 부합여부 검토 및 인증심의 시행 - 수업 개설 - 강의계획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						
3	수강신청 및 수업운영 준비	스쿨학과/교양교육원 대학(교육개발처) 대학(전자계산소)	<ul><li>학사시스템을 통한 강의계획서 공람 및 수강신청</li><li>수업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지원</li></ul>						

4	수업 운영	스쿨(학과)교양교육원 대학(교육개발처) 대학(교육혁신센터) 대학(현장실습지원센터)	- 교과목별 수업 운영 - 학습부진학생 위한 지원 -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
5	학생 역량평가	스쿨학과교양교육원 대학(교육개발처)	- 평가계획 기반으로 직무역량 수행 준거에 따라 평가 시행
6	교육과정 운영평가	스쿨학과/교양교육원 대학(교육개발처) 대학(성과관리센터)	- 운영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재학생, 졸업생, 교수자, 산업체 대상 평가 시행
7	교육과정 품질관리	스쿨'학과'교양교육원 대학(교육개발처)	- 교육과정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, 환류계획 수립

제15조(교육품질관리) ① 대학의 교육품질관리는 교과목, 스쿨, 대학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, 각 단계별 세부사항은 각 호와 같다.

	교육품질관리 체계									
연번		구분	구분 주체 내용							
1	교과목	학생 자체평가	학생 센터, 스쿨	- 학생의 강의평가(중간, 기말)를 통해 학습목표 달성 도, 학생의 요구사항 파악						
2	교과목	교수자 자체평가	교수자 센터, 스쿨	- 교수자 대상 매 학기 과목별 학습목표 달성도, 교육 환경, 교육과정 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된 수업에 대한 평가, 개선사항 파악						
3	스쿨	학생대상 교육과정 운영평가	학생 센터, 스쿨	- 재학생 대상 스쿨 교육과정 편성, 운영에 대하여 설 문조사 및 FGI 시행						
4	스쿨	교육과정 운영평가	센터, 스쿨	- 스쿨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원장(학과장) 대상 자체평가(설문조사) 시행						
5	스쿨	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	스쿨	- 교과목 차원의 평가(강의평가, 교수자 자체평가), 스 쿨차원에서 시행된 각종 평가 결과, 교육과정 운영 현황, 만족도조사 결과 종합 분석 및 보고서 작성						
6	대학	교육수요자 대상 만족도조사	센터	- 성과관리센터의 교육수요자 대상 만족도조사 활용						
7	대학	교육과정 성과 평가	센터	- 신입생 충원율, 재학생 충원율, 취업률, 역량성취도 포함						
8	대학	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	센터, 스쿨	- 교육과정혁신센터 주도로 교육과정 현황, 스쿨 교육 품질관리보고서를 분석, 종합하여 대학 차원의 교육 품질관리 보고서 작성						

제16조(유의사항) 이 규정과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⑥ (경과조치) 제6조(유의사항) ①항의 변경은 2022년 01월 27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.
- ⑦ (경과조치) 제3조(정의) ①항의 각 호의 변경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.
- ⑧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⑨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⑩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(l) (경과조치) 제4조(구성)의 4, 제7조(편성원칙)의 (l)항의 변경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.

〈별표1〉인증평가표 서식

### 1) 개발 인증 평가표

# 교육과정 개발인증 평가표

심사대상	스쿨	
심사내상	전공	

			평	가 등	<del></del>		
	평 가 항 목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점수
		8	7	6	5	4	
명 가 항 목	교육목표와 핵심역량과 연계성을 갖고 설정되었다.						
	행하였다.						
	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다.						
	│ 하도록 스쿨의 역량 체계가 설계						
II. 교육과정	보와 학습목표가 정확하게 기술되						
편성	목표 달성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학습결과물과 평가방법이 연계성						
	학습설계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						
	강의장 여건, 교과목 간의 연계 성)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						
III 그성인가이	개발에 참여하고, 교수 전원의 합	10	8	6	4	2	
		10	8	6	4	2	
의견 수렴	취지와 목표를 설명하고, 충분히						
총계	100점 만점					7	4
기즈	□ 평균 80점 이상: 인증						
기준	□ 평균 79점 이하: 미인증(재인증 실/	시)					

-1 1 41	-1 ( > 7(	-1	- 0 -1=1+1	A 2 -1 .	-1 -1 41.51	-1 11	22 - 2	+1-1-0	1 2 -1 .	1 7 11.	1 + \	
병 가 의	견 (스쿨(	전공) .	교육과정의	우수한 /	점, 보완할	섬에	대한	의견을	기술하	계 수십시	<u> [오.)</u>	
			ما ما ء	-1.1 ·	더 기 그) 스	ы A	<b>Δ</b>	日ムした	1 . 11			

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평가자 : \_\_\_\_(서명)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

#### 2) 개편 인증 평가표

## 교육과정 개편인증 평가표

시시다나	스쿨	
심사내상	전공	

		:	평 가 등	급		
평가문항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점수
	20	16	12	8	4	
1. 개편 필요성에 대한 배경, 문제의식 등이 명확하 게 드러나 있는가?						
2. 교육과정 개발시점의 교육목표를 근간으로 개편 이 이루어졌는가?						
3.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체계적인 분석방법과 절차 에 의해 개편되었는가?						
4. 교육과정의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 이 반영되었는가?						
5. 스쿨 교수들의 합의과정을 통해 개편되었는가?						
100점 만점					,	점
□ 평균 80점 이상: 인증 □ 평균 79점 이하: 미인증(재인증 실시) 평가 의 견 (스쿨(전공) 교육과정의 우수한 점, 보완할	· 점에 대	한 의견을	기술하여	주십시 <u>오</u>	<u>2.)</u>	

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			
20	•	•	•

-1 1 1		( - 1 - 1
평가자	•	(서명
O = I = I	•	7710

##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